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교폭력 관련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의 불법촬영물 포함 필요〉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169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학교폭력 관련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의 불법촬영물 포함 필요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5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2. 11.

다. 회부연월일 : 2025. 1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신속한 심의 및 삭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불법촬영물등의 범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을 포함시켜 학교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제1항).

Ⅲ. 검토의견

1. 학교폭력 관련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의 불법촬영물 포함 필요

현행법은 성범죄·아동성착취 관련 불법촬영물등에 대해서만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즉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관련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심의와 삭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에 대해서도 불법촬영물등에 포함시켜 부가통신사업자가 이러한 불법 정보의 유통 사실을 인식하면 즉시 삭제나 차단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하여 관련 정보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 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 ----- ----- ----- ----- ----- ----- -----

현행	개정안
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② ~ ⑥ (생략)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u>」 제16조의4에 따른 <u>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개인 정보, 허위사실 등</u> ② ~ ⑥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현행법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¹⁾에 따르면, 「성폭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불법촬영물등으로 규정하고,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공개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나 이용자의 신고·삭제 요청이 있으면, 부가통신사업자 및 웹하드 운영자 등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로 구성된 ‘조치의무사업자’는 이를 인식하는 즉시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²⁾에 따른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³⁾에 따른 촬영물, 영상물 등은 불법촬영물등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폭력 관련 사이버폭력 정보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가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최근 빈발하는 학교폭력의 기반이 되고 피해

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덤페이지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정보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동 개정안은 해당 정보를 불법촬영물등의 범주에 포함시켜 사이버폭력 관련 정보에도 즉각적인 유통방지 조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범죄와 관련된 불법정보의 확산 시간을 줄이고 피해 확대를 예방하는 실효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디지털 성범죄물 규제 조항에 학교 폭력, 따돌림과 같은 상이한 내용의 포함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우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이버 폭력 정의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목적 딥페이크 영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불법촬영물등에 포함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⁴⁾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 조항에 따라서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도 유통방지 조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성적인 딥페이크 영상이 아닌 신체적·정신적 폭력 행위로 인한 사이버 폭력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의 불법촬영물 방지 조항의 연혁을 감안하여 즉시 차단 대상으로 추가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조항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의 일환으로 성범죄착취물 등에 대한 별도의 유통방지 등에 대한 규제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조항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촬영물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착취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따돌림 등의 사이버 폭력의 경우에도 성착취물 등과 동일한 수준의 즉시 차단과 같은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조항은 2020년 3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확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같은 해 5월 국회가 불법촬영물 등(성폭력 동영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를 명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것임.
- 성적인 부분이 아닌 학교 폭력 관련된 사이버 폭력의 경우 이러한 불법 성착취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통방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동 법의 법체계와 해당 조항의 연혁 등을 감안하여 판단이 필요함.

○ 또한, 금전적 거래 등을 통해 신속한 확산 우려가 큰 디지털 성범죄물과 달리, 학교폭력 등 사이버폭력물은 확산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고, 촬영물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식별 등의 조치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이버폭력물의 경우,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상당한 조사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따돌림이나 허위사실 유포⁵⁾와 같은 유형은 영상 자체보다 그 배경과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아 디지털 성범죄물과 동일한 방식의 조치를 적용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동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치의 무사업자가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음.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는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피해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2차 피해 발생 위험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큰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별도의 유통방지 체계를 마련한 규정으로,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사전 비교·식별 및 게재 제한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사이버폭력 촬영물등은 촬영물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까지 포함하는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이러한 유형의 특성상 비교·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상호 공유나 금전적 거래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에 비해,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은 확산 속도 측면에서 사전 비교·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을 불법촬영물등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 서면심의 대상에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을 추가하거나, 향후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에 긴급조치권을 도입할 경우 그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학교폭력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함.

- 동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사이버폭력 관련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해당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딥페이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이미 ‘불법촬영물등’으

로 규율되고 있어 별도의 규정 신설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음.
또한 따돌림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불법촬영물등’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치 의무사업자가 이를 식별·선별하여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실무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학교 폭력 관련 촬영물 등은 촬영물·영상물·음성물·개인정보·허위사실 등으로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이를 ‘불법촬영물등’의 개념으로 포섭할 경우 개념이 과도하게 확장되고 사업자에게 분쟁 소지가 큰 불법성 판단을 사실상 위임하게 되어 과잉차단이나 표현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음.

또한 같은 조항에서 국가가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비용을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부담시키거나 국가가 선지출 후 상환청구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별도로 규율하기보다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체계 내에서 전담기구 설치나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관계 기관 간 삭제 지원의 집행 및 연계 절차를 개선하는 방식이 보다 법체계상 정합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관련 사이버폭력이

불법촬영물등에 포함되지 않아 유통방지 조치가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 개정안은 이를 불법촬영물등 범주에 포함하여 신속한 차단과 피해 확산 방지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성적인 딥페이크 이외의 학교 폭력과 관련된 신체·정신적 폭력 형태의 사이버폭력까지 ‘n번방 방지법’의 불법촬영물 규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법체계와 해당 조항의 연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폭력 관련 사이버폭력물은 허위사실 유포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여 비교·식별 및 즉시 차단을 디지털 성범죄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5